

case
4

Top Mount Assembly

요약

사례명	Top Mount Assembly 원산지표시
사례번호	NY N340493 (2024.07.01.)
사실관계	한국에서 중국산 PS 베어링과 한국산 인슐레이터를 조립(press-fitting)하여 완성된 Top Mount Assembly를 미국으로 수출
쟁점 및 판정	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여부 자동차 서스펜션 부품에 사용되는 중국산 PS 베어링과 한국산 인슐레이터는 각각 완전히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, 한국에서 수행한 공정(인슐레이터에 PS베어링을 fitting한 공정)은 단순하므로,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(인슐레이터) 및 중국(PS베어링)으로 표시해야 함
근거법령	-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(19 C.F.R. § 134) -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(19 U.S.C. § 2411)

I 판정사례²⁾

사 례 명

[Top Mount Assembly] 원산지표시

사례번호

NY N340493 (2024.07.01.)

사실관계

요청자	Onestop Customs Corporation	
제품	제품명	• Top Mount Assembly
	구성	• PS 베어링(Plain Sliding Bearing) (중국산) • 인슐레이터(Insulator Assembly) (한국산) - 메인 플레이트, 베어링 플레이트, 고무, 상부 컵, 하부 컵, 볼트 3개로 구성
	용도	• 차량 차체와 Suspension Strut 상단을 연결하는 역할 • 서스펜션 회전 시 원활한 움직임을 지원하는 PS 베어링 포함

제조과정



- 상세과정
1. 메인 플레이트와 베어링 플레이트를 고무 사출(Injection) 방식으로 고정

2. 상단 컵 및 하부 컵 용접

3. 볼트를 삽입하여 인슐레이터 완성

4. 프레스 장비를 사용하여 중국산 PS 베어링을 인슐레이터에 삽입(press-fitting)

5. 조립 후 미국 수출

2)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

쟁점사항

- ✓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관련 법령
및 분석

1

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관련 법령 검토

☐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은 CBP 『19 C.F.R. § 134』에 따라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판정

- 실질적 변형: 명칭(Name), 성질(Character), 또는 용도(Use)의 변화

❖ 참고 판례: *Texas Instruments Inc. v. United States (1982)*.

- 실질적 변형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(totality of the evidence)해야 한다고 명시

❖ 참고 판례: *Ferrostaal Metals Corp. v. United States, 11 CIT 470, 478, 664 F. Supp. 535, 541 (1987)*

❖ 참고 판정: *CBP Ruling HQ W968434*

- 제조 또는 조립 과정이 단순한 공정(minor process)으로서 원재료가 공정 후에도 본질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

❖ 참고 판례: *Uniroyal, Inc. v. United States (1983)*

내용 신발 갑피를 밑창에 부착하는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, 갑피는 완성된 신발의 본질적 요소(the very essence of the completed shoe)라고 판시함

판정 결과

☐ CBP는 중국산 PS 베어링을 인슐레이터에 프레스 장비로 삽입하는 과정이 단순 조립에 불과하다고 판단.

또한 자체적인 검토*를 통해 PS 베어링과 인슐레이터가 각각 완전히 다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부품이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과 중국으로 나누어 구분해야 한다고 판정함

* Strut Mounts 판매 기업인 KYB의 홈페이지 제품 소개 내용³⁾을 참고하여 PS 베어링과 인슐레이터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검토

기타 의견

☐ 요청자는 제301조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았으나, PS 베어링의 원산지가 중국이므로 무역법 제301조 적용 대상에 해당함

☐ 해당 물품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(AD/CVD)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, 이는 CBP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판정과 별개의 것이므로 국제무역청(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; ITA)에서 발행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하길 권고함

결론

- ✓ 최종제품은 한국(인슐레이터)과 중국(PS 베어링)이 각각 원산지 표시되어야 하며, 중국산 PS 베어링의 경우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임

3) KYB, [https://www.kyb.com/resources/shock-strut-basics/all-about-strut-mounts/#:~:text=As%20the%20name%20\(strut%20mount,mount%20is%20like%20a%20sandwich.](https://www.kyb.com/resources/shock-strut-basics/all-about-strut-mounts/#:~:text=As%20the%20name%20(strut%20mount,mount%20is%20like%20a%20sandwich.)

II 시사점

- 최종 제품과 관련하여, 단순한 프레스 조립(press-fitting) 과정만으로는 부품이 새로운 제품으로 변형될 정도의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
- 완제품의 구성 부품들이 가공 후에도 각각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, 완제품에 복수의 원산지가 부여될 수 있음

III 참고자료

- CBP Ruling HQ W968434 (2007.01.17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W968434>
- CBP Ruling NY N340493 (2024.07.01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N340493>
- CBP 19 C.F.R. § 134, <https://www.ecfr.gov/current/title-19/chapter-I/part-134>
- Ferrostaal Metals Corp. v. United States, 11 CIT 470, 478, 664 F. Supp. 535, 541 (1987), 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1504219/ferrostaal-metals-corp-v-united-states/?q=Ferrostaal+Metals+Corp.+v.+United+States&type=o&order_by=score+desc&stat_Published=on
-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(19 U.S.C. § 2411), <https://uscode.house.gov/view.xhtml?req=granuleid:USC-prelim-title19-section2411&num=0&edition=prelim>
- Texas Instruments, Inc. v. United States, 69 CCPA 151 (1982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928163/texas-instruments-inc-v-united-states/?q=Texas+Instruments%2C+Inc.+v.+United+States>
- Uniroyal, Inc. v. United States (1983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2283980/uniroyal-inc-v-united-states/>